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권 - 청구권
② 소유권 - 지배권
③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④ 계약해제권 - 형성권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3.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ㄴ.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③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6.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7.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자산에 관한 규정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⑤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8.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1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②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16.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④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17.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 공유지분의 포기** **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 계약의 해지**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2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2.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③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대리인의 파산
⑤ 복대리인의 사망

2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24.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③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③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1.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2.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②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③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④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34. 매도인 甲은 매수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전부를 丙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丙과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매매대금채권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② 채권의 양도통지는 甲이 乙에게 직접 해야 하며 丙에게 이를 위임할 수 없다.

③ 乙이 채권의 양도통지만을 받은 경우, 그 통지 전에 乙이 甲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으면 乙은 이를 가지고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에게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경우, 甲은 丙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35.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③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36.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③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37. 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②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⑤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주택관리사보

2022년 1차 2교시 정답과 해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⑤	①	④	①	③	⑤	⑤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②	①	④	①	③	②	④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③	⑤	⑤	④	⑤	①	①	①	④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④	③	⑤	②	③	⑤	②	④	①	③

공식 공개 시험지 · 봄기출 문항별 해설

1 민법총칙 · 민법의 법원 — 정답 ⑤

① O 해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② O 해설 민사 재판의 기준은 성문법률이 먼저이고, 그것이 없을 때 관습법, 관습법도 없을 때 조리가 보충하는 차례다(민법 제1조).

③ O 해설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 그 의사를 채우는 해석 기준이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④ O 해설 대법원규칙도 헌법이 인정한 성문법이므로 등기·소송 절차처럼 민사에 관한 내용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108조).

⑤ X 해설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 적용하고,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 관습이다(민법 제1조, 대판 80다3231).

2 민법총칙 · 권리의 분류 — 정답 ①

① X 해설 상계권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로 두 채무를 대등액에서 없애는 형성권이다(민법 제493조).

2 해설 계속 — 정답 ①

② O 해설 소유권은 타인의 협력 없이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리라 작용상 지배권에 속한다(민법 제211조).

③ O 해설 사원총회 결의권은 사단법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라 공익권인 사원권에 든다(민법 제73조).

④ O 해설 해제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소급해 없애므로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⑤ O 해설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에 대응해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므로 재산권이고,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민법 제568조 제1항).

3 민법총칙 · 권리의 경합 — 정답 ④

① X 해설 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 책임과 나란히 서지 않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국가배상법 제8조).

② X 해설 ㄷ은 옳지만,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ㄱ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2019다226005).

3 해설 계속 정답 ④

③ X 해설 ㄴ이 끼었다 — 국가의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앞서 규율하며, 하자담보·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하는 ㄷ이 빠졌다(국가배상법 제8조, 대판 2017다202050).

④ O 해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배상(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와 채무불이행 책임(ㄷ)은 별개 권원이라 경합해 병존한다(대판 2019다226005, 대판 2017다202050).

⑤ X 해설 ㄴ이 끼었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에는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은 그 법에 없는 사항만 보충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4 민법총칙 · 미성년자 정답 ①

① X 해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준다(민법 제141조).

② O 해설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생기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된다(민법 제117조).

③ O 해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면 그 안에서 한 미성년자의 처분은 동의가 있던 것과 같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6조).

④ O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한 동의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5조 제1항, 대판 2005다71659).

⑤ O 해설 영업 허락을 받은 범위에서는 미성년자도 혼자 거래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5 민법총칙 · 부재와 실종 정답 ③

① X 해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보존·이용·개량 같은 관리행위를 넘어서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제118조).

② X 해설 법원은 자기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24조 제2항).

5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법률상 이해를 얻는 자라,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조 제1항, 대결 92스4).

④ X 해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고한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⑤ X 해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고,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특별실종은 1년이다(민법 제27조).

6 민법총칙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정답 ⑤

① O 해설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만으로는 제한능력자가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에게 해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6조 제3항).

② O 해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제2항).

③ O 해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처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④ O 해설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인 상대방만 가지므로,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⑤ X 해설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면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 모든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잃는다 — 동의 위장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만 해당한다(민법 제17조).

7 민법총칙 · 재단법인의 정관 정답 ⑤

① O 해설 재단법인은 사원 없이 설립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므로, 목적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1호).

② O 해설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의 주소가 되고 설립등기를 할 곳을 정하므로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3호).

③ O 해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곧 실체라서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4호).

7 해설 계속 정답 ⑤

④ O 해설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 곧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까지 반드시 적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5호).

⑤ X 해설 존립시기·해산사유(제7호)와 사원자격의 득실(제6호)은 사단법인 정관에만 적는 사항이라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민법 제43조, 제40조).

8 민법총칙 · 법인의 대표권 정답 ②

① O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만 성립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이 제35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대판 2003다30159).

② X 해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대판 91다24564).

③ O 해설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제60조를 준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거래가 무효다(대판 2002다64780).

④ O 해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특정 행위만 남에게 대리시킬 수 있고,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안 된다(민법 제62조).

⑤ O 해설 이사가 여럿이어도 정관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마다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각자대표가 원칙이다(민법 제59조 제1항).

9 민법총칙 · 법인의 해산과 청산 정답 ④

① O 해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설립허가와 평소 업무 감독이 주무관청 몫이다(민법 제95조).

② O 해설 사단법인에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될 뿐이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유지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제81조).

③ O 해설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을 빨리 끝내려고 변제기 전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감정인 평가로 변제한다(민법 제91조).

④ X 해설 목적 달성의 불능은 그 자체로 해산사유이고, 설립허가의 취소는 이와 나란히 있는 또 다른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9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O 해설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와 직결되는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민법 제80조, 대판 94다13473).

10 민법총칙 · 물건 정답 ③

① O 해설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므로 전기도 동산이다(민법 제98조, 제99조 제2항).

② O 해설 재고상품처럼 늘고 줄어드는 동산 집합물도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되면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2002다72385).

③ X 해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의 모습 같은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소유자의 의사를 함께 보아 정한다(대판 96다36517).

④ O 해설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를 등기에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⑤ O 해설 토석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라 토지소유권이 미치므로, 따로 떼어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삼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12조).

11 민법총칙 · 주물·종물과 과실 정답 ②

① O 해설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쓰고 있어도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대결 2000마3530).

② X 해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고, 토지 저당권의 효력도 그 위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제365조).

③ O 해설 천연과실은 분리될 당시 수취권을 가진 사람(소유자·지상권자·선의 점유자 등)의 것이 되므로, 심은 사람이 아니라 분리 때의 권리자가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1항).

④ O 해설 건물을 사용해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므로, 선의 점유자는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201조 제1항, 대판 95다44290).

⑤ O 해설 차임·이자 같은 법정과실은 날짜로 나누어, 수취할 권리를 가졌던 날수에 비례한 만큼 각자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12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정답 ③

① O 해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했으리라 인정될 때만 나머지가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② O 해설 일부무효 규정은 법률행위 자치가 지배하는 영역의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137조, 대판 2011다9068).

③ X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 때부터 유효해질 뿐,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유효해지지 않는다(대판 91다26546).

④ O 해설 취소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은 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42조).

⑤ O 해설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취소권이 사라지고,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남아 있어도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3조 제1항, 제144조 제2항).

13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정답 ④

① X 해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② X 해설 정지조건은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하고, 성취로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해제조건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③ X 해설 조건의 성취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④ O 해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⑤ X 해설 조건은 효력 발생을 막는 사유이므로,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한다(대판 93다20832).

14 민법총칙 · 소멸시효 정답 ②

① X 해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가 완성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다 — 시효를 단축·경감하는 약정은 된다(민법 제184조).

14 해설 계속 정답 ②

② O 해설 1개월 단위로 내는 집합건물 관리비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1호, 대판 2005다65821).

③ X 해설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는 계약 때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④ X 해설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설정등기청구권은 장차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대판 2002다7213).

⑤ X 해설 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이라, 법원은 본래의 기산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대판 94다35886).

15 민법총칙 · 시효의 중단 정답 ①

① X 해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관념의 통지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발신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민법 제168조 제3호, 대판 95다30178).

② O 해설 승인은 방식이 따로 없어,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안다는 뜻을 이자 지급·기한 유예 요청처럼 묵시적으로 드러내도 된다(민법 제168조 제3호, 대판 2021다271732).

③ O 해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판결로 확정된 단기채권은 그 시효가 10년이 된다(민법 제178조 제2항, 제165조 제1항).

④ O 해설 지급명령 신청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어 시효를 중단하고,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2조, 대판 2011다54686).

⑤ O 해설 가압류는 압류·가처분과 함께 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민법 제168조 제2호).

16 민법총칙 · 법인의 등기 정답 ④

① O 해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대항요건이다(민법 제33조, 제54조 제1항).

② O 해설 설립허가가 있으면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관청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 기간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센다(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16 해설 계속 정답 ④

③ O 해설 이사의 성명·주소는 설립등기 사항이고, 대표권 제한도 등기사항이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60조).

④ X 해설 청산이 끝나면 그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는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3주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94조).

⑤ O 해설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사무소를 옮기면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되고, 관할이 다르면 옛 곳과 새 곳 모두에서 3주 안에 등기한다(민법 제51조).

17 민법총칙 · 단독행위 정답 ①

① O 해설 재단법인 설립행위(ㄱ)만 받는 사람 없이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지분 포기·이사 사임·해지는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대판 2015다52978, 대판 2009다31260).

② X 해설 ㄴ이 끼었다 —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등기를 해야 지분이 넘어간다(민법 제267조, 대판 2015다52978).

③ X 해설 ㄷ·ㄹ은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ㄱ이 빠졌다(민법 제543조 제1항, 대판 2009다31260).

④ X 해설 ㄴ·ㄷ이 끼었다 — 공유지분 포기와 법인 이사의 사임은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대판 2015다52978, 대판 2009다31260).

⑤ X 해설 지분 포기·이사 사임·해지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셋 다 틀린 보기이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인 ㄱ이 빠졌다(민법 제543조 제1항, 대판 2015다52978).

18 민법총칙 · 사기·강박 정답 ③

① O 해설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채 한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없어 무효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치면 취소할 수 있다(대판 84다카1402).

② O 해설 교환에서 상대방은 목적물 시가를 스스로 따져 볼 처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물건의 시가를 알리지 않아도 기망이 아니다(대판 2000다54406).

③ X 해설 강박은 불법한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해악 고지 없이 각서 서명을 강하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아니다(대판 78다1968).

18 해설 계속 정답 ③

④ O 해설 계약 취소와 불법행위 배상은 별개의 구제수단이라, 피해자는 계약을 그대로 둔 채 사기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⑤ O 해설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의 사기는 상대방 자신의 사기로 보아, 상대방의 선의·악의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대판 98다60828).

19 민법총칙 · 불공정한 법률행위 정답 ②

① O 해설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을 문제 삼으므로,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2다52238).

② X 해설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궁박 정도도 함께 고려한다(민법 제104조, 대판 2009다50308).

③ O 해설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도, 무효를 알았다면 적정 대금으로 합의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대금의 계약으로 전환된다(민법 제138조, 대판 2009다50308).

④ O 해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지 볼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⑤ O 해설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고,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으로 생긴 것도 포함한다(민법 제104조, 대판 2002다38927).

20 민법총칙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정답 ④

① X 해설 진의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라 ㄱ은 빠져야 하고, 옳은 ㄴ·ㄷ이 없다(대판 2000다51919).

② X 해설 ㄴ은 옳지만, 비진의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증명책임을 진다는 ㄷ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92다2295).

③ X 해설 ㄱ이 끼었다 — 최선이라 판단해 한 표시는 내키지 않았어도 진의가 있는 것이고, 과실로 불일치를 몰랐다면 착오라는 ㄴ이 빠졌다(대판 2000다51919).

④ O 해설 불일치를 알고 한 표시만 비진의표시라 과실로 몰랐다면 착오 문제인 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ㄷ이 옳다(민법 제107조 제1항, 대판 92다2295).

20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ㄱ이 끼었다 — 판례는 진의를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으로 본다(대판 2000다51919).

21 민법총칙 · 착오 정답 ②

① O 해설 매도인이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피하려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95다24982).

② X 해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는 취지·요건이 달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③ O 해설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그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대판 90다17927).

④ O 해설 중과실 표의자의 취소를 막는 단서는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에게는 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49794).

⑤ O 해설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정하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97694).

22 민법총칙 · 복대리권의 소멸 정답 ③

① O 해설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바탕으로 하므로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1호).

② O 해설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해, 그 위에 선 복대리권도 따라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③ X 해설 본인 쪽 대리권 소멸사유는 사망뿐이라, 본인에게 특정후견이 개시되어도 대리권·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27조).

④ O 해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인 파산처럼 복대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⑤ O 해설 복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 대리인 사망과 같은 소멸사유다(민법 제127조 제2호).

23 민법총칙 · 대리와 표현대리 정답 ⑤

① O 해설 본인이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하면, 그 범위 안의 대리행위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민법 제125조).

② O 해설 대리권이 소멸한 뒤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된다(민법 제129조, 대판 97다55317).

③ O 해설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 그 권한을 넘어 한 사법상 거래에 제126조가 적용된다(대판 78다282).

④ O 해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들어 있지는 않다 — 해제에는 따로 수권이 필요하다(대판 85다카971).

⑤ X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가 생겼어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대판 2013다213038).

24 민법총칙 ·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정답 ⑤

① O 해설 건물을 새로 지으면 앞선 권리자 없이 소유권이 처음 생기므로 원시취득이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7조).

② O 해설 유실물은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민법 제253조).

③ O 해설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선점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민법 제252조).

④ O 해설 점유취득시효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 얻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2004다31463).

⑤ X 해설 경매의 매수인은 채무자·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

25 물권법 · 중간생략등기 정답 ④

① X 해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ㄱ은 빠져야 하고, 옳은 ㄴ·ㄷ이 없다(대판 91다18316).

25 해설 계속 정답 ④

② X 해설 ㄷ은 옳지만, 대금 인상 약정 뒤 甲이 인상분 미지급을 들어 丙 명의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2003다66431).

③ X 해설 ㄱ이 끼었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중간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없애지 않으며, 옳은 ㄷ이 빠졌다(대판 91다18316).

④ O 해설 甲은 인상 대금을 못 받았음을 들어 丙 명의 등기를 거절할 수 있고(ㄴ), 허가구역에서 甲·丙을 당사자로 받은 허가에 따른 등기는 무효라는 ㄷ도 옳다(대판 2003다66431, 대판 97다33218).

⑤ X 해설 ㄱ이 끼었다 — 세 사람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어도 乙은 여전히 甲에게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1다18316).

26 물권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답 ⑤

① X 해설 ㄱ은 옳지만, 점유를 넘겨주고 처분한 경우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ㄴ과 양도에 채무자 승낙이 필요한 ㄷ도 옳다(대판 98다32175, 대판 2000다51216).

② X 해설 ㄷ은 옳지만,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이어 가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ㄱ·ㄴ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2009다73011, 대판 98다32175).

③ X 해설 ㄱ·ㄴ은 옳지만,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의 신뢰관계가 따라 양도에 채무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ㄷ도 옳다(대판 2000다51216).

④ X 해설 ㄴ·ㄷ은 옳지만,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ㄱ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2009다73011).

⑤ O 해설 점유하는 매수인과 점유를 넘겨 처분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양도에는 채무자 승낙이 필요해 셋 다 옳다(대판 98다32175, 대판 2000다51216).

27 물권법 · 자주점유 정답 ①

① X 해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여도 소유 의사의 추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대판 2015다230372).

② O 해설 점유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자의 타주점유라는 하자를 이어받지 않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9조, 대판 2006다82540).

27 해설 계속 정답 ①

③ O 해설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점유 추정은 남고, 추정을 깨려면 무단점유처럼 소유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7다241116).

④ O 해설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한 모든 사정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한다(대판 2017다360).

⑤ O 해설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사실상의 의사면 되고, 법률상 그런 지배를 할 권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8 물권법 · 점유취득시효 정답 ①

① X 해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94다40734).

② O 해설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사정이 없으면 점유를 잃어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3다47745).

③ O 해설 시효완성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자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3다47745).

④ O 해설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에게 점유를 정당화할 지위에 있어,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92다51280).

⑤ O 해설 시효완성자는 곧 등기를 넘겨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87다카1979).

29 물권법 · 저당권 정답 ①

① X 해설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이때 설정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② O 해설 등록된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특별법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

③ O 해설 저당권자는 변제기에 채권을 받지 못하면 따로 집행권원 없이 저당물 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민법 제363조 제1항, 제356조).

29 해설 계속 정답 ①

④ O 해설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어서 매수 신청이 막히지 않으므로,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스스로 매수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민법 제363조 제2항).

⑤ O 해설 권한 없이 저당목적물을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떨어뜨리면 저당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대판 2006다42818).

30 물권법 · 전세권 정답 ④

① O 해설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 사라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대판 2003다35659).

② O 해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한 장래 채권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01다69122).

③ O 해설 토지 전세권이 끝났을 때 지상물이 남아 있으면,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규정을 유추해 전세권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대판 2005다41740).

④ X 해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이어받아 전세금 반환의무를 지고, 구소유자는 벗어난다(대판 99다15122).

⑤ O 해설 토지·건물 주인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뒤 토지를 넘기면, 새 토지 주인은 건물 쪽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 제1항).

31 물권법 · 공유물의 독점 점유 정답 ④

① X 해설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없어 ㄱ은 빠져야 하고, 옳은 ㄴ·ㄷ이 없다(대판 2018다287522).

② X 해설 방해배제청구(ㄴ)는 옳지만, 독점 사용한 공유자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ㄷ도 옳은데 빠졌다(민법 제263조, 제741조).

③ X 해설 ㄱ이 끼었다 — 판례는 소수지분권자끼리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ㄴ이 빠졌다(대판 2018다287522).

④ O 해설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ㄴ)와 지분 비율의 부당이득반환(ㄷ)을 구할 수 있지만 인도청구(ㄱ)는 못 한다(민법 제263조, 대판 2018다287522).

31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ㄱ이 끼었다 — 인도를 허용하면 독점한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큼 쓸 권리까지 빼앗기므로,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인도를 구하지 못한다(대판 2018다287522).

32 물권법 · 유치권 정답 ③

① O 해설 유치권은 점유로 채무자의 사용을 막아 변제를 강제하는 권리라,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둔 간접점유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② O 해설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었다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어도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③ X 해설 유치권배제특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④ O 해설 유치권배제특약도 사적 자치에 따른 의사표시라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특약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2016다234043).

⑤ O 해설 물건을 붙잡고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민법 제326조).

33 채권법 · 선택채권 정답 ⑤

① X 해설 선택권은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0조).

② X 해설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선택하지 않아야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민법 제381조 제1항).

③ X 해설 제3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약정도 유효하고,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의사표시를 해서 선택한다(민법 제383조 제1항).

④ X 해설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실제로 선택한 때가 아니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⑤ O 해설 처음부터 불능인 급부가 섞여 있으면 남은 급부로 채권이 특정되고,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때만 예외다(민법 제385조).

34 채권법 · 채권양도 정답 ②

① O 해설 매매대금채권 같은 금전채권은 성질상 양도를 막는 사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② X 해설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도 유효하다(민법 제450조 제1항, 대판 95다40977).

③ O 해설 양도인이 통지만 한 때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 예컨대 일부 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④ O 해설 양도인이 한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통지를 믿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민법 제452조 제2항).

⑤ O 해설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특약을 과실 없이 몰랐던 양수인에게 한 양도는 유효하다(민법 제449조 제2항).

35 채권법 · 합의해제 정답 ③

① O 해설 일부 이행된 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했다고 보려면 계약을 끝낼 뜻뿐 아니라 이미 이행한 것의 원상회복에 관해서도 뜻이 맞아야 한다(대판 2020다271315).

② O 해설 합의해제도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성립하므로, 한쪽이 원상회복·손해배상 조건을 내걸었다면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한다(대판 95다43044).

③ X 해설 합의해제 때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④ O 해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규정 등 법정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9다1455).

⑤ O 해설 매매가 합의해제되면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돌아오므로,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36 채권법 · 계약금 정답 ⑤

① O 해설 계약금계약은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아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대판 2007다73611).

36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O 해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이행 착수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③ O 해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어서, 손해는 실제 손해를 증명해 배상받는다(대판 95다11429).

④ O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허가 뒤에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8다62427).

⑤ X 해설 매도인은 배액을 이행제공하면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해야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2151).

37 채권법 · 토지임대차 정답 ②

① O 해설 임대인은 목적물을 넘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② X 해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임차권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2조 제1항).

③ O 해설 임대물 보존은 임대인의 권리이자 의무라,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이를 참아야 한다(민법 제624조).

④ O 해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도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어, 3기분인 6백만 원 연체면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1조, 제640조).

⑤ O 해설 지상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은 변제기가 지난 최후 2년분 차임으로 건물을 압류해야 생기고, 그 뒤 저당권처럼 우선변제를 받는다(민법 제649조).

38 채권법 · 도급 정답 ④

① O 해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만들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에 맞춘 부대체물이면 제작이 계약의 중심이라 도급의 성질을 띤다(대판 2010다56685).

② O 해설 도급은 일의 결과를 약속하는 계약이라,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이 제3자를 써서 일을 완성해도 된다(민법 제664조).

38 해설 계속 정답 ④

③ O 해설 보수 일부를 먼저 주기로 했다면 도급인이 선이행의무를 지므로,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1항, 제665조 제1항).

④ X 해설 보수와 맞바꾸는 인도는 점유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검사한 뒤 계약대로 완성됐다고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대판 2004다21862).

⑤ O 해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39 채권법 · 부당이득 정답 ①

① X 해설 채권자가 횡령한 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변제받았다면, 그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다(대판 2003다8862).

② O 해설 제3자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해 보증채무가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 것은, 연대보증인이 제3자의 재산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판 96다22655).

③ O 해설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대차 종료 뒤 계속 점유했어도 본래 용도대로 쓰지 않아 이익이 없으면 반환의무가 없다(대판 95다14664).

④ O 해설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은 적법한 관리행위라, 허락받아 점유하는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2다9738).

⑤ O 해설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을 못 구하지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변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2조, 대판 2003다46451).

40 채권법 · 불법행위 정답 ③

① X 해설 ㄱ은 옳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민법 제757조).

② X 해설 제3자 행위와 공작물 하자가 함께 원인이 되어도 하자로 생긴 손해로 보므로 ㄷ은 빠져야 하고, 옳은 ㄱ·ㄴ이 없다(대판 2017다227103).

③ O 해설 과실로 심신상실을 자초한 자(ㄱ)와 도급·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ㄴ)은 배상책임을 지고, ㄷ은 공동원인도 하자로 보아 빠진다(민법 제754조, 제757조, 대판 2017다227103).

40 해설 계속 정답 ③

④ X 해설 ㄷ이 끼었다 — 공작물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이고, 심신상실을 자초한 자의 책임인 ㄱ이 빠졌다(민법 제754조, 대판 2017다227103).

⑤ X 해설 ㄷ이 끼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본다(민법 제758조 제1항, 대판 2017다227103).